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우)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 8F[www.kma.org]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급여팀장 백영기 [6581] 과장 고영옥 [6573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9243호

시행일자 2018. 10. 31.

수 신 각 시·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개정 제출(통보)

1. 관련근거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37호(2018. 10. 31)
- 보건복지부, 예비급여과-2368호(2018. 10. 31)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13호, 2018.9.28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.

○ 주요 개정사항

가.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 예비급여 확대
나.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산정행위 변경
다. 내시경 세척·소독료 예비급여 적용 사항 반영

○ 시행일 : 2018년 11월 1일

○ 문의 : 044-202-2665

(대의협 제813-9243호) 시행일자 2018. 10. 31

붙임: 고시개정문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